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59826(본소), 2012나59833(반소) 판결

[점유회수청구 · 건물명도]

재판경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3177, 2013다13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59826(본소), 2012나59833(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85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

2. 주식회사 디에이치개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한국펄프공업협동조합

2.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

3. 한국전기기계 주식회사

4. 화영종합개발 주식회사

피고인수참가인 주식회사 한맥

변론 종결 2012. 11. 30.

판결 선고 2012. 12. 2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852(본소),

2012가합3579(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국펄프조합이 2011.

5. 3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3,410/39,37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56/635을, 피고 대한전기기계가 2012. 1. 2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9,321/39,37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153/635을, 피고 한국전기기계가 2012. 1. 2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8,521/39,37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공유 지분 중 139/635를, 피고 화영종합개발이 2012. 1. 2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585/39,37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중 10/635을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30호증의 도면, 을 제3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사진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고 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홍기찬

판사김정민

별지